

공 시 송 달

- 재산압류사전예고통지 -

- 공고기간 : 2019. 10. 15. ~ 2019. 10. 29.
- 서류의명칭 :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
- 공고내용

소유자현황		급수전위치	체납기간	체납액(원)			비고
주 소	성 명			계	상수도 사용료	하수도 사용료	
명촌10길68	세신중 합건설	명촌10길68	'18.12. ~ '19.09.	87,390 (10개월)	56,900	28,170	2,320

위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공고하오니,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(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, ☎052-229-5751)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2019. 10. 15.

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

